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2023. 2.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3-13

나. 제 안 자: 채우진 의원 외 7명

다. 제안일자: 2023년 1월 31일(화)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2월 6일(월)

2. 제안사유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유형의 변경, 위탁사무의 내용의 전면 변경 등의 중요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5호)

나.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안 제5조 제1항)

다.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 제2항)

4.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월 31일 채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 취지는 민간위탁 사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서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임.

○ 현재 마포구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180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 규모는 연간 70,474백만 원에 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마포구 민간위탁 사무추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1년(1월)	2022년(1월)	2023년(1월)
민간위탁사업	161	170	180
수 탁 기 관	133	138	149
예 산	57,810	63,650	70,474

○ 이처럼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민간위탁은 매년 그 대상사무와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방지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1]를 개정해(2022.1.1. 시행) 신규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연속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음.

〈 최근 3년간 마포구 재위탁·재계약 대상사업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1년(1월)	2022년(1월)	2023년(1월)
민간위탁사업	25	58	31
수 탁 기 관	25	51	29
예 산	14,472	24,263	18,866

○ 동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민간위탁의 "중요내용"을 정의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위탁절차에 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그 밖에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인용 조문에 오기된 항 번호를 수정하였음.

- "중요내용"은 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

○ 한편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위탁유형 변경, ▸다른 사무의 추가나 전면 변경, 분리의 경우는 당초 위탁사무와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이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1)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

○ 참고로, 중요내용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삼척시, 순천시, 고성군 등이 있음.

〈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p16) 〉

□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위탁으로 변경·처리하는 기준**

▸ (원칙)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함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① 사무의 변경에 따라 **위탁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예산지원형 ↔ 자립형, 시설형 ↔ 사무형)

②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③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 시 각각 신규 추진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④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⑤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 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다만, (사무내용 변경 없이)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유형을 변경하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경우 ① 또는 ② 방법으로 추진 가능

①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유형 또는 공유재산 변경
② 변경협약 체결하여 위탁유형 또는 공유재산 변경

○ 따라서, 개정안은 “지침”의 민간위탁 처리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상향 규정해 위탁사무의 임의적인 내용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방만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 타 지자체 의회 조례 현황

2023년 1월 기준

연번	지역	조례명	중요내용 변경 관련 의회 동의 조항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
3	삼척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를 말한다. <신설 2022.2.25.> 7. “시설형 위탁”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2.25.>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삼척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2.25.>
4	순천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6. “중요내용”이란 다른 위탁사무 추가 또는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사항 및 그 밖의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8. 5.>

연번	지역	조례명	중요내용 변경 관련 의회 동의 조항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5.>
5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조2767>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